

인건비 지출비율 다빈도 전산착오입력 사례

C1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전체 종사자의 인건비를 입력한 사례

< 착오 입력 사례 >	< 올바른 사례 >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의 인건비를 신고	○ 고시상 급여유형별로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 의 인건비만 인정 가능

관련근거(고시 제11조의2제1항)

구분	장기요양요원*	2022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5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C2

장기요양요원이 아닌 근무자를 자격증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직종의 종사자로 인건비를 입력한 사례

< 착오 입력 사례 >	< 올바른 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인 시설장의 인건비를 신고 (실제 사회복지사 인력신고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의 인건비는 신고금액에서 제외 ○ 반드시 지자체에 인력 신고 된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만 입력 ※ 자격증 소지만으로는 불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지자체에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을 배치하고 추가로 사회복지사를 배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신고 (지자체에 인력신고 된 사회복지사 기준)

관련근거(고시 제11조의2제5항)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 한다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의 사회복지사에 한함
 2.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제57조제1항 각 호의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수를 다음의 범위 내에서 인정

수급자 수	장기요양요원 인정 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1명
30명 이상 60명 미만	2명
60명 이상 90명 미만	3명
90명 이상	4명

C3

방문요양의 시설장이 방문간호 간호사를 겸직하는 경우, 시설장 인건비를 신고한 사례

< 착오 입력 사례 >	< 올바른 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이면서 방문간호 간호사를 겸직하는 경우 시설장 인건비까지 방문간호사의 총 인건비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아니므로, 시설장의 급여는 제외하고, 방문간호의 간호사로 지급되는 인건비만 인건비 지출비율에 신고

C4

병설기관에서 겸직하여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중복으로 입력하거나 겸직여부 체크를 누락하는 사례

< 착오 입력 사례 >	< 올바른 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인력의 인건비 총액을 겸직 기관 (2개소) 양쪽에 각각 입력(중복) 및 겸직여부란(□)에 체크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총액을 지출하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총액만 입력, 겸직여부 체크 × ○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관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종사자 인건비 입력 - 반드시 겸직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올바른 겸직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신고 예시

⇒ 겸직하는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지출하는 기관

- ▶ ⑥임금총액, ⑦사회보험부담금, ⑧퇴직적립금 입력
- ▶ ⑨겸직여부, ⑩겸직 종사자 인건비, ⑪겸직 종사자 기관유형 입력하지 않음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npre670m01

급여제공연월: 2021-11 | 급여유형: 노인요양시설(개정법)

① 장기요양급여비용(②+③+④) | ② 공단부담금 중 인건비 비율 반영 금액 | ③ 공단부담금 중 인건비 비율 미반영 금액 | ④ 본

저장순번	종사자구분	실 배치인원 ⑤	임금 총액 ⑥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⑦	퇴직 적립금 ⑧	겸직 여부 ⑨	겸직 종사자 인건비 ⑩	겸직 종사자 기관유형 ⑪
2	사회복지사	1				<input type="checkbox"/>	0	
2	간호(조무)사	1				<input type="checkbox"/>	0	
2	물리(작업)치료사					<input type="checkbox"/>	0	
2	요양보호사	6				<input type="checkbox"/>	0	

⑩ 인건비 (⑥+⑦+⑧+⑩) 0 원

⇒ 겸직하는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병설 기관

- ▶ ⑨겸직여부 체크, ⑩겸직 종사자 인건비 • ⑪겸직 종사자 기관유형 입력
- ▶ ⑥임금총액, ⑦사회보험부담금, ⑧퇴직적립금 입력하지 않음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npre670m01

급여제공연월: 2021-11 | 급여유형: 노인요양시설(개정법)

① 장기요양급여비용(②+③+④) | ② 공단부담금 중 인건비 비율 반영 금액 | ③ 공단부담금 중 인건비 비율 미반영 금액 | ④ 본

저장순번	종사자구분	실 배치인원 ⑤	임금 총액 ⑥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⑦	퇴직 적립금 ⑧	겸직 여부 ⑨	겸직 종사자 인건비 ⑩	겸직 종사자 기관유형 ⑪
2	사회복지사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0	
2	간호(조무)사	1				<input type="checkbox"/>	0	
2	물리(작업)치료사					<input type="checkbox"/>	0	
2	요양보호사	6				<input type="checkbox"/>	0	

⑩ 인건비 (⑥+⑦+⑧+⑩) 0 원

C5 기타 착오입력 하는 사례

1.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를 실제와 다르게 과도하게 입력**하는 경우
예시: 요양보호사 월 인건비를 1천 만원으로 입력
2. **단순 전산입력 착오**인 경우
예시: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십억으로 입력
3. **허위 숫자를 전산 입력**하는 경우
예시: 인건비에 '1', '5' 등 숫자를 허위 입력